

문서번호	여성가족과-4581
결재일자	2016.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여성복지담당	여성가족과장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은경	신정미	홍정선	02/05 박형중		
협 조					

2016년도 여성단체 지방보조사업 추진계획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등 여성복지를 위한 공모사업을 통해 여성단체를 적극 발굴하여 공익활동사업 지원을 통한 단체의 역량을 강화시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여성의 능력 개발 및 복리증진으로 건전한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016년도 여성단체 지방보조사업 추진계획



2016. 2.

교육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I 추진 개요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2~제32조의10
-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지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추진 방향

- 여성단체 역량 강화 및 여성복리 증진
- 구정핵심·단체특화사업 추진
- 사업집행 점검 및 보조금지원 효과 확인
- 공모사업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6. 3 ~ 12월
- 사업예산
 - 공모사업 : 54,900천원 [사업공모 신청 접수후 심의]
- 공모선정 : 7개 단체 내외

II 추진 일정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일정

2015년 지방보조금 정산심사 및 성과평가	- 실적서(정산서) 심사, 보조금 최종확정 -전년도 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	여성가족과	1~2월
↓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수립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 - 공모(홈페이지, 구보 등)	여성가족과	2월
↓			
사업공모 및 접수	- 지원보조사업 단체 공모 및 접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여성가족과	2월 중
↓			
공모사업 심의 및 선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사업 선정	기획예산과	3월
↓			
지방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지원 결정통보 -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여성가족과 보조사업자 여성가족과	3월~
↓			
보조금 정산·집행교육	- 보조금 시스템 정산·집행교육 (사업담당자, 보조사업자)	기획예산과	3~4월
↓			
약정(협약)체결	- 보조금 집행사업 표준협약서 제출	여성가족과	3월
↓			
사업추진 및 상황점검	- 보조사업자 지원사업 추진 - 수행상황 점검 및 현장 점검 등	보조사업자 여성가족과	3~12 월
↓			
정산·평가	-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 결산 - 성과평가 등	보조사업자 여성가족과	12월

III 사업 추진 계획

1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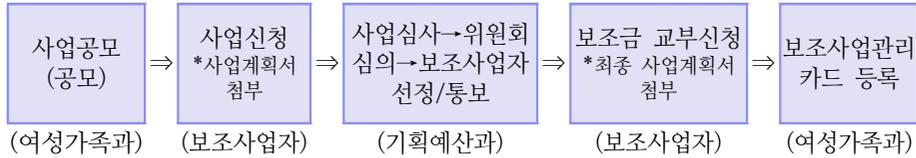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 시·도가 정책상 또는 시·군·구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우

□ 보조금지원 제외대상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1.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2.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3.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2 지방보조사업 지원절차

□ 지원절차



① 사업 공모 공고

- 지원사업 공모 공고기간 : 2016. 2. 15(월) ~ 2. 17(수)
- 지원사업 공모 대상분야 :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한 사업

지원사업 분야	지원사업 공모 대상	보조사업자 선정
여성의 사회적 참여 분야	○ 여성역량강화 및 건전가정 지원 사업	사업별 ○개 단체
	○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 양성평등 참여 및 문화 확대 사업	

※ 공모절차 제외 대상(법 제32조의2 제4항)

-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 국고보조사업(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시·군·구가 시행하는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모절차 제외대상에 포함

② 사업 공모 신청

- 접수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사업검토사항
 - 신청사업 및 사업자 적격 여부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단체 등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등

③ 심의 및 결정

- 사업유형별로 연 1회 공모절차에 따라 민간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여 지원
- 심의위원회 심사 : 2016. 3월 중
 - 심의 주관 : 성북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사업신청서, 실적서 및 심의조서 사전배부를 통한 개별심사
 - 평가배점 : 사업주관부서 평가 30% + 심의위원회 평가 70%
 - 심의위원 점수와 단체행정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분포에 따른 등급화관리로 예산 규모의 범위 내에서 보조 사업자 선정
 - 심의 방법 : 기획예산과에 검토의견서 제출 ⇒ 위원회 심의 ⇒사업자 선정

※ 심의위원회 기능

-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 3년주기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평가
-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사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사업 심의기준

- 관계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 신청사업의 독창성·경제성·파급효과·지역사회기여도·주민욕구 충족도
-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 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 사업비외 단체운영경비를 자체 충당 가능 여부(자부담 30%이상 부담)
- 성격이 유사한 단체의 회원 및 사업의 중복여부
- 사회단체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및 관계법령·조례의 지원 근거 취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결정
- 단체의 전문성·책임성·활동실적 등

3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정산

보조금 지원방법

-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 통보
- 여성가족과와 지원대상단체와 사업추진 약정 체결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및 관리
- 지원대상단체의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따라 여성가족과에서 보조금 지원

보조금 정산방법

-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 제출
-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액으로 확정
-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업비 집행시 단체명의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IV 행정 사항

2016년 여성단체 지방보조사업 공모 홍보 : 홍보담당관

-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등

사업설명회 개최 : 기획예산과

- 일 시 : 3~4월중 개최 예정